

3. 논문 투고규정 및 심사원칙, 심사규정

투 고 규 정

1. 투고 자격은 미납회비가 없으며, 석사학위 이상의 본회 회원에게만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석사과정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
2. 논문투고는 대한철학회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https://sophia.jams.or.kr>)을 이용한다.
3. 논문 작성은 한글 또는 외국어로 한다. 그러나 반드시 별도로 영어로 된 <Abstract>, <Keywords> 등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① 한글 논문의 경우, 투고 논문 앞에는 반드시 A4 반쪽 분량의 <논문개요>와 필자 자신이 정한 <주제분야> 2~3개 정도 및 <주제어>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A4 반쪽 분량의 영어로 된 <Abstract> 및 <Keywords> 5개 내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논문의 경우, 투고 논문 앞에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한 A4 반쪽 분량의 <논문개요>와 필자 자신이 정한 <주제분야> 2~3개 정도 및 <주제어> 5개 내외를 선정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논문 뒤에는 참고문헌과 A4 반쪽 분량의 영어로 된 <Abstract> 및 <Keywords> 5개 내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논문 체제:

논문제목 - 필자명(각주로 소속 학교, 학과, 직위 명기) - 논문개요 - 주제분야(2~3개) - 주제어(5개 내외)
- 본문 - 참고문헌 - Abstract-필자명(소속 명기) - Keywords(5개 내외)

4. 공동연구 논문일 경우 책임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5. 논문 투고시 연회비(중신회원 제외)와 심사료 7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단, 외국어 논문의 경우 심사료를 10만원으로 한다.
6. 심사결과 게재여부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기본 게재료 또는 연구비 수혜논문 게재료를 징수한다.

• 기본게재료[각주 참고문헌 포함 200자 원고지 120매 기준 - 강사 5만원, 교수(연구교수, 강의전담교수, 초빙교수 등 포함) 15만원, 연구비 30만원]
+초과 5매당 1만원 추가

•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납부 계좌번호: 카카오뱅크 7979-60-91400 이체현

7.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8. 학회지 발행일 및 원고마감일은 매년 다음과 같다.

호 별	원 고 마 감 일	발 행 일	비 고
봄	1月 15日	2月 28日	
여름	4月 15日	5月 31日	
가을	7月 15日	8月 31日	
겨울	10月 15日	11月 30日	

9. 원고작성시 유의사항

- ① 주는 각주로 통일한다.
- ② 각주의 번호는 논문 전편을 통해 일련번호로 매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편집의 일관성을 위해 장·절 표기는 아래와 같이 통일한다.
장은 로마자(I, II, III)로 표기하고 절 이하는 1. 1) (1) 순으로 표기한다.
- ④ 참고문헌의 기재방법은 동일논문에서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고, 준말은 일정한 표기법을 사용해야 한다.
- ⑤ 참고문헌은 국내자료(국내서, 번역서, 국내논문)→국외자료(원전자료, 국외서, 국외논문)→기타 자료(인터넷 자료) 순으로 작성하고, 각각 가나다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 국외문헌은 중국·일본·서구 순으로 나열한다.
- ⑥ 국내서와 중국·일본 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쌍꺼쇠(『 』)로 표시하고, 논문과 편명의 경우는 홑꺼쇠(「 」)로 표시한다.

서구자료의 경우, 단행본은 서명만 ‘이탤릭 활자로 표시하고, 논문의 경우에는 큰따옴표(“ ”)로 표시한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은 ‘논문’으로 간주하여 홑꺼쇠(『 』)로 처리한다.

⑦ 참고문헌 목록은 다음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다.

※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초판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음), 출판도시명: 출판사, 발행연도.

(보기)

금장태, 『정약용: 한국실학의 집대성』,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2.

_____, 『한국유학의 탐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김 진, 『칼 마르크스와 희랍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하기락, 『조선철학사』, 서울: 형설출판사, 2000.

상 양(우재호 옮김), 『상군서』, 서울: 소명출판, 2005.

와타나베 히로시(김선희·박홍규 옮김), 『일본정치사상사: 17~19세기』,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움베르토 에코(이필렬 옮김),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 서울: 이론과 실천, 1991.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 北京: 人民出版社, 1983.

Frye, N., *Four Essays*,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보기)

하영석, 「칸트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대상개념」, 『철학연구』 제48집, 대한철학회, 1992, 1-20쪽.

Chan, W. T., “New ideas in Old Terminology”, *philosophy East and West*, vol. 17, University of Hawaii, 1969, pp.88-100.

Taylor, C., „Wesen und Reichweite distributiver Gerechtigkeit“, *Negative Freiheit?: Zur Kritik des neuzeitlichen Individualismus*, Frankfurt a. M.: Suhrkamp, 1995, pp.100-132.

⑧ 각주의 인용문헌 표기는 다음 규정에 의거해 작성한다.

※ 단행본: 저자명(번역자명), 『서명』 판수(출판도시명: 출판사, 발행연도), 쪽수.

(보기)

김 진, 『칼 마르크스와 희랍철학』(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0), 142-143쪽.

하기락, 『조선철학사』(서울: 형설출판사, 2000), 25쪽.

상 양(우재호 옮김), 『상군서』(서울: 소명출판, 2005), 174쪽 참조.

와타나베 히로시(김선희·박홍규 옮김), 『일본정치사상사: 17~19세기』(서울: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17), 356-358쪽 참조.

움베르토 에코(이필렬 옮김), 『논문 어떻게 쓸 것인가』(서울: 이론과 실천, 1991), 32-35쪽.

馮友蘭, 『中國哲學史新編』(北京: 人民出版社, 1983), 10쪽.

N. Frye, *four Essays*(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1957), p.52.

※ 논문: 저자명, 「논문제목」(『잡지명』 권호, 발행기관, 발행연도), 쪽수.

(보기)

하영석, 「칸트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대상개념」(『철학연구』 제48집, 대한철학회, 1992), 10쪽.

W. T. Chan, “New ideas in Old Terminology”(Philosophy, East and West, vol. 17, University of Hawaii, 1969), p.3.

⑨ 각주에서, 앞에서 언급한 동일한 자료를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 경우로 생략하여 표기할 수 있다.

※ 단행본: 저자명, 『서명』, 쪽수./같은 책, 쪽수.

(보기)

하기락, 『조선철학사』, 25쪽.

같은 책, 25쪽.

Ibid., p.25.

※ 논문: 저자명, 「논문명」, 쪽수./같은 논문, 쪽수.

(보기)

하영석, 「칸트와 데카르트에 있어서 대상개념」, 10쪽.

같은 논문, 10쪽.

Ibid., p.10.

⑩ 인용의 경우, 직접인용은 쪽수만 명기하고, 간접인용은 반드시 ‘참조’를 붙인다.

⑪ 재인용의 경우는 출전을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

(보기) “파스칼은, 신을 경험하고 믿음을 아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심정이라고 하였다.”

B. Pascal(Trans. by W. F. Trotter), *Thoughts*(New York: Collier & Son, 1990), p.99; 김종문, 『21C 삶과 대화의 도덕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2000), 280쪽 재인용.

⑫ 띄어쓰기: 반드시 띄어쓰거나 붙여야 할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띄어쓰든 붙여쓰든 무방하다. 그러나 일관성은 지켜야 한다.

⑬ 중점(·)과 쉼표(;): 단어를 나열할 때 쉼표나 중점을 사용한다. 그러나 중점의 경우는 다음 몇 가지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 1) 예술상·언어상·이념상의 율곡
 - 2) 방송명·방송시간도 공식자료에 속한다.
 - 3) 정치·경제·사회적 조건
- 이 외의 경우는 모두 쉼표를 사용한다.

⑭ AI 사용 관련 규정 : 논문 투고자가 논문 작성시 AI 도구로 생성한 문장 및 자료 등을 사용할 경우, 각주 또는 참고문헌(References)에 AI 도구 활용 내역을 표기해야 합니다.

표기 항목 : AI도구회사, 연도, AI도구 이름(버전, 출시일자/활용일자), [자료 유형], URL, 활용방법 등

표기 예시 : OpenAI. (2025), ChatGPT(5.0, 2025.08.08.), [대형언어모델(LLM)], <https://chatgpt.com/> 연구방법의 도식화를 위해 AI도구를 활용하였음.

10. 게재 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대한철학회가 갖는다.

② 저자는 『철학연구』의 투고규정에 따라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철학연구』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이양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저자는 『철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을 어떤 다른 형태로 출간하거나 재사용할 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사전에 학회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④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와 저자가 별도로 협의하여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11. 본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시에는 반드시 학회의 <연구윤리 규정>을 따라야 한다.

12. 투고 논문이 본 학술지의 목적, 편집 방침 및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시,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에 대한 수정이나 철회를 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심 사 원 칙

1.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심사한다.
2. 각 심사위원들은 투고논문들에 대해 독창성, 일관성, 표현의 적절성, 연구 주제의 명확성, 학문적 기여도, 기존의 국내연구 활용도, 인용의 정확성, 투고규정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급으로 평가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 기준표에 따라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4. 이 원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5. 이 원칙은 2023년 5월 21일부터 적용한다.
6. 이 원칙은 2026년 2월 13일부터 적용한다.

* 논문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단기준 *

	심사 내용	처리 기준	심사 결과	비고
1	1. 3인 모두 게재 가 2. 게재 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3.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2인 4. 게재 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5. 게재 가 2인, 게재 불가 1인	1. 게재 가 2. 수정 항목 수정	게재가	수정 조건 충족 후 게재
2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2. 게재 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3. 수정 후 게재가 3인 4.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1인	수정 사항 수정	수정 후 게재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사항 확인 후 이번 호 또는 다음 호 게재
3	1. 게재 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 불가 1인 2.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3. 수정 후 게재가 2인, 게재 불가 1인 4.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 사항 제시하여 재투고 받음	수정 후 재심사	3인의 재심 후 게재 결정
4	1. 게재 가 1인, 게재 불가 2인 2.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불가 1인 3.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2인 4. 수정 후 재심사 3인 5.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불가 1인 6.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 불가 2인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심사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철학회 운영규정 제17조 (2)의 1과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논문심사위원회는 편집위원회 규정 제5조에 따라서 설치된다.

제3조 [위원장] 논문심사위원회의 장(長)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4조 [위원] 논문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을 고려하여 학술지 매 호마다 편집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본 학회 회원 약간 명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업무] 본 위원회는 본 학회 학회지와 기타 본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간행물에 게재되는 논문의 심사와 연관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1) 심사절차

- ① 논문투고 기일이 종료되면 심사대상 논문의 총목록을 작성한다.
-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심사대상 논문의 심사업무를 관장할 편집위원을 위촉하고, 위촉된 편집위원은 다시 심사대상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 ③ 심사위원들에게 메일을 발송하여 심사결정여부를 확인한다.
- ④ 심사위원들은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올린다.
- ⑤ 편집위원은 해당논문의 심사서를 수합하여 이를 근거로 해당논문의 게재여부를 판단한 후, 이를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 ⑥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보고사항을 확인한 후,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 ⑦ 게재여부를 투고자들에게 통고한다.

(2) 심사기준

- ①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② 연구방법의 적절성
- ③ 내용의 완결성 ④ 논문작성의 성실성 ⑤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⑥ 논문주제의 창의성 ⑦ 연구결과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⑧ 논문초록의 적합성 ⑨ 기타 본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⑩ 다른 학술지 또는 논문집에 게재된 사실 여부

(3) 심사방법

- ① 심사서 작성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할 것
- ②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할 것
- ③ 심사결과는 세부항목 별 평가 점수를 종합한 성적과 일치해야 함
- ④ 수정제의 사항은 심사서와 논문 복사본에 상세하게 기재할 것
- ⑤ 게재불가의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심사서에 충분히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4) 기타

- ① 논문심사는 규정된 세부항목별로 점수로 평가하며, 항목별 점수를 종합하여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 ② '수정후게재'로 판정된 논문은 수정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마감규정에 맞추어 원고를 재접수 시킬 때에만 당해 호에 게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다음 호에 게재하기로 한다.

제6조 [회의] 논문심사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제7조 [운영] 편집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편집간사가 담당한다.

제8조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 [논문심사상] 편집위원회는 매년 심사 활동이 탁월한 논문 심사위원 2인을 선정하여 '대한철학회 논문심사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선정 기준 및 시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1994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1998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본 규정은 2025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